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91
----------	------

발의연월일 : 2017. 5. 16.

발의자 : 홍익표 · 백혜련 · 김병기

문미옥 · 윤관석 · 김영진

이원욱 · 권칠승 · 박재호

이종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선행기술의 조사, 전자업무화 위탁, 온라인 원격근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특허 심사품질의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협업이 강화되는 추세로, 다른 나라와 출원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도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7조제1항제4호 신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이 경우 반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반출의 요건, 그 밖에 서류의 국외 반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① 특허출원·심사·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 <u>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u> <u>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u> <u>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u> <u>우. 이 경우 반출할 수 있는</u> <u>서류의 종류, 반출의 요건,</u> <u>그 밖에 서류의 국외 반출에</u> <u>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u> <u>부령으로 정한다.</u></p>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